

마약류 용어 표시·광고 규제 강화를 위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의안 번호	3656
----------	------

발의년월일 : 2026년 4월 20일
발 의 자 : 마약 퇴치를 위한
예방교육특별위원장

1. 주 문

- 마약류 범죄가 급속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마약김밥’, ‘마약치킨’, ‘마약떡볶이’ 등 식품 명칭과 광고에 ‘마약’이라는 표현이 관행적으로 사용되어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약화시키고 왜곡된 인식을 확산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식품 등에 마약류 및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하는 표시·광고를 금지하도록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것을 국회와 정부에 건의함.

2. 제안이유

- 사회 전반에서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우려가 확산됨에 따라 국회는 2024년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의2를 신설하여 마약류 및 유사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음.
- 그러나 마약류 및 유사 표현에 대해 표시·광고 금지가 아닌 권고하는 수준에 그쳐, 온라인 등에서 마약류 관련 표현이 사용·노출되더라도 실질적인 제재가 어려운 한계가 있음.
- 이에 마약류 용어를 오용하거나 남용하는 문화 개선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누구든지 식품 등에 마약류 및 유사표현을 표시·광고를 할 수 없도록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규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 나. 기타사항 : 없음.

4. 이 송 처

- 가. 국회,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류 용어 표시·광고 규제 강화를 위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마약류 범죄가 빠르게 증가하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 사회 질서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2024년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2024년 단속된 마약류 사범은 23,022명으로, 최초 집계가 시작된 1985년의 1,190명과 비교하면 약 20배 증가한 수치이다. 이는 마약 문제가 특정 계층의 일탈을 넘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며, 마약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는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럼에도 시민들의 일상생활에서는 ‘마약김밥’, ‘마약치킨’, ‘마약떡볶이’ 등 식품의 명칭이나 광고에 ‘마약’이라는 용어가 관행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표현은 중독성 있는 맛을 강조하기 위한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마약을 친숙하거나 긍정적인 의미로 인식하게 만들어 마약류의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

이에 정부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의2를 개정(2024.1.2., 시행 2024.7.3.)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식품 영업자에게 마약류 및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한 표시 또는 광고를 하지 않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해당 규정은 금지가 아닌 권고 수준에 그쳐, 영업자가 이를 따르지 않더라도 실질적인 제재가 어려운 한계가 있다. 실제로 온라인 등에서는 여전히 관련 표현이 사용·노출되고 있음에도 규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마약류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왜곡된 인식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식품 등에 마약류 및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하는 표시·광고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등 보다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이에 우리 서울특별시의회는 마약류를 연상시키는 표현의 무분별한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식품 등에 마약류 및 이와 유사한 표시·광고를 금지하도록 국회와 정부(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신속히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6년 4월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일동